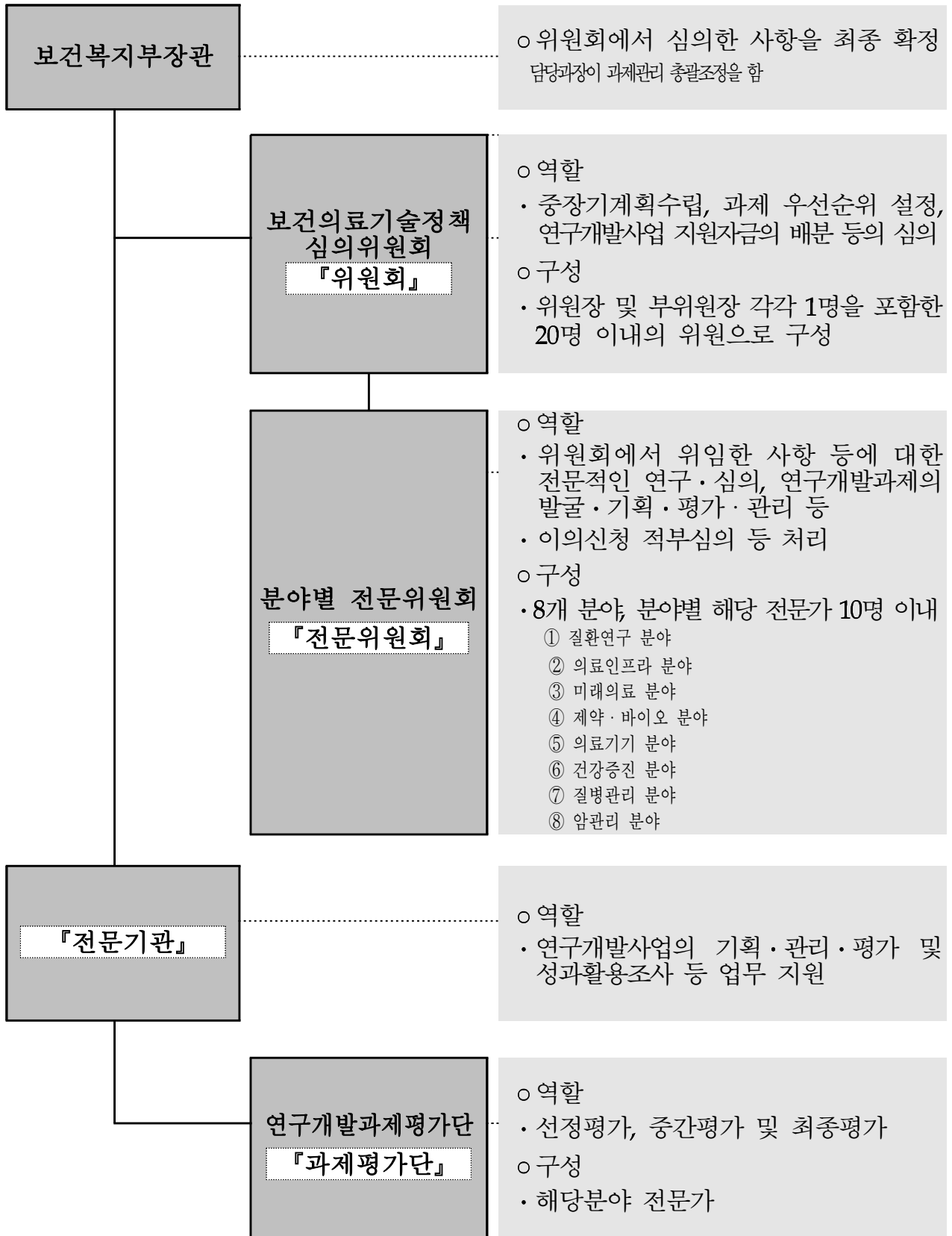


3 추진체계



4 용어정의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과제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사업 지원자금의 배분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 위원회를 말함(「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
전문위원회	<p>[한국보건산업진흥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8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말함(「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제4항) <p>[국립암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관리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암연구사업의 경우 암정복추진기획단을 말함
담당과장	<p>[한국보건산업진흥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의 해당 연구개발사업 담당 과장을 말함 <p>[국립암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관리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암연구사업의 경우 질병정책과장을 말함
전문기관	<p>[한국보건산업진흥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함(「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7조) ☞ 진흥원은 기획, 관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시행규칙 제5조) <p>[국립암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암연구사업의 경우 국립암센터를 말함(「암관리법」 제9조제4항)
연구사업 관리자	<p>[한국보건산업진흥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의 본부장 및 연구개발사업별 담당 부서의 장(단장)을 말함 <p>[국립암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암연구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 암정복추진기획단장을 말함
과제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사업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말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제21조)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를 말함
중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평가와 단계평가를 총칭하여 말함
연차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연구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비 규모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전년도 실적 및 해당연도 계획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단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연구기간이 단계로 나누어진 과제에 대하여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비 규모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전단계 실적 및 차기단계 계획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정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평가 후 계속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세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함

최종평가

- 총 연구기간 종료 후에 연구수행의 결과 및 성실성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함

성과활용 조사

- 연구개발사업(과제)으로 발생한 연구 성과에 대해 종료 후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함

중간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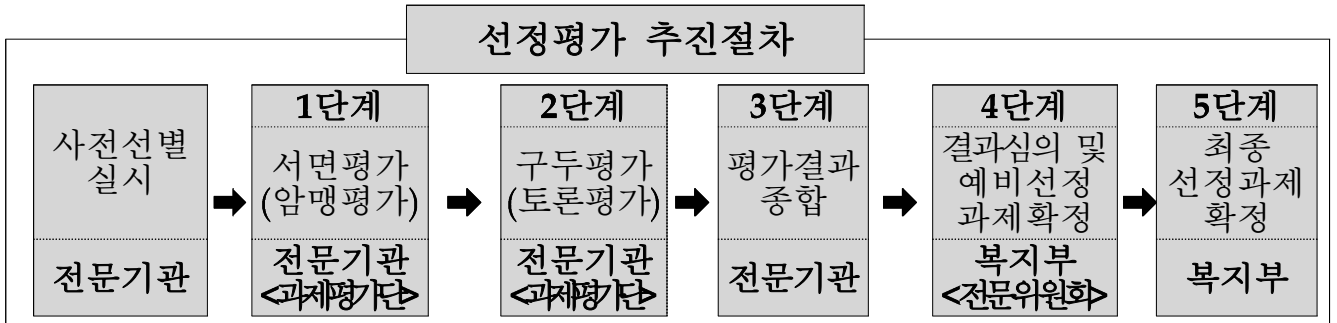
-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연구내용과 다음 연차의 연구개발계획을 검토 및 확인하고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함

우수평가위원

-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성과 평가 역량이 높은 평가위원 일부를 지정하여 평가와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말함

5 평가내용

1. 선정평가 단계



1-2. 신규계획서 접수

1) 제출대상

- 가.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신규계획서를 제출 받음
- 나. 사업공고는 30일 이상 시행하며, 접수과제수가 선정 예상 과제수 이하일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1-3. 사전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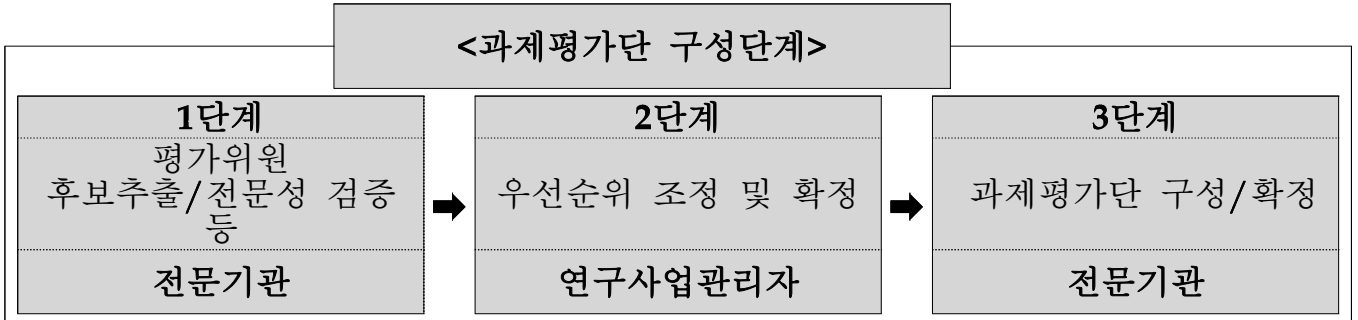
1) 평가주체 : 전문기관의 장

2) 검토방법

- 가. 연구개발사업 계획 공고 후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의 구성요건, 민간부담금의 적정성,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책임자의 참여율 등을 검토
 - ※ 과제 구성요건, 연구책임자 자격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 민간부담금, 기업부설인증서 등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선정공고시까지 보완기회를 부여

1-4. 전문가 평가

1) 평가주체 : 과제평가단



- 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추출 및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함
 - 나. 연구사업관리자는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을 실시하고 확정함
 - 다. 전문기관의 장은 위 각 절차를 거친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로부터 지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로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절차 및 평가단 구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8)을 고려하여 선정

<평가위원 후보자 풀 구성 설명>

연구분야, 나이, 산학연비율, 제척기준 등을 고려하여, ▶ 평가위원 후보추출 : 자동추출 또는 키워드추출 또는 지정추출 * 전문기관의 장은 우수평가위원 중 2인내외를 평가위원으로 지정 가능 ▶ 전문성 검증 : 추출된 평가위원 후보목록에서 전공분야, 각종 실적 및 제재정보, 제척기준 등 확인 ▶ 우선순위 조정 및 확정 : 평가위원 후보풀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평가위원 후보풀 최종 확정

<과제 규모에 따른 과제평가단 구성>

구분	소형	중형 및 대형	연합형
과제평가단 구성	5명 내외	8명 내외	10명 내외

※ 지원 형태 및 규모에 따른 과제 분류 (붙임 2 참조)

- 라. 기획과제의 경우 기획과제 추진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8)의 제2호의 가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가방법

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면평가, 구두평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서면평가

○ 사전선별을 통과한 과제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 70점 미만(100점 만점 기준)은 탈락함.

구두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 70점 미만(100점 만점 기준)은 탈락함

현장점검

○ 서면 또는 구두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기관의 방문을 통하여 실시함

나. 평가는 과제평가단의 집체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평가에 대해서는 온라인 평가방식(우편 포함)을 활용할 수 있음

다. 서면평가는 필요시 암맹평가(Blind Review)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라. 암맹 기준 위반과제는 감점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마. 구두평가는 필요시 토론(공개)평가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바. 구두평가 및 현장점검 대상과제수는 최종선정 예상과제수가 1개일 경우 3배수로, 2개 이상인 경우 2배수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률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사업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음

사. 각 단계별 평가점수는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단,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아. 최종점수는 가중치를 적용한 각 단계별 평가점수 및 가감점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함

자. 과제평가단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대상으로 RFP 부합성, 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 연구개발 내용, 총 연구기간 및 해당연도 신청연구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함

차. 사업별 평가방법 및 최종평가점수 산출방식, 가감점 부여기준 등은 시행계획에서 확정하여 사업안내서, 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카.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호 내지 아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방법 및 과제선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심의기준>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함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3. 중복성의 예외

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과정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심의방법

가. 협약을 맺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과제평가단에서 심의·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평가결과 종합

1) 우선순위 지정

가.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점수가 높은 과제로부터 지원우선순위를 지정

2) 연구비 조정

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평가단의 연구비 검토의견과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담당과장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후보과제에 대해 연구비 조정을 실시함

3) 평가결과 보고

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 평가계획, 최종 평가점수, 연구비 조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전문위원회에 상정함

1-6. 결과심의 및 최종확정

1) 심의 및 확정 주체 : 전문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

2) 심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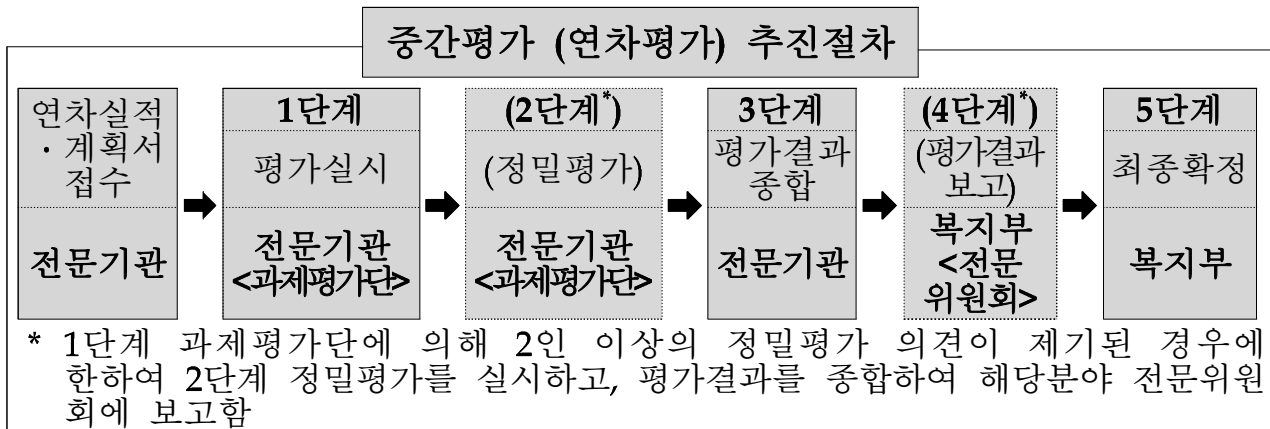
가. 전문위원회는 평가결과의 타당성, 예비선정 대상과제 및 지원액 등을 심의함

3) 확정방법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선정 대상과제를 확정함
 나. 전문기관의 장은 예비선정대상과제의 기본정보(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목표 및 내용 등)를 일정기간 공개하여 중복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신청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함

다. 예비선정 대상과제의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마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선정과제를 확정함

2. 중간평가 단계 (연차평가)



2-1. 연차실적 · 계획서 접수

1) 제출대상

가. 전문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연차실적 · 계획서』를 해당연도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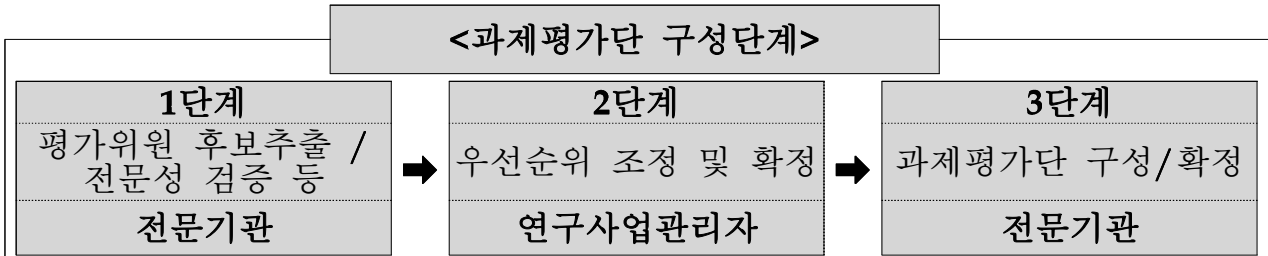
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차실적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 계속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2-2. 전문가 평가

1) 평가유형

가. 총 연구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비 규모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전년도 실적 및 해당년도 계획을 평가함

2) 평가주체 : 과제평가단



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추출 및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함

나. 연구사업관리자는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을 실시하고 확정함

다. 전문기관의 장은 위 각 절차를 거친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로부터 지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로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 및 평가단 구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8)을 고려하여 선정

<평가위원 후보자 풀 구성 설명>

연구분야, 나이, 산학연비율, 제척기준 등을 고려하여,

- ▶ 평가위원 후보추출 : 자동추출 또는 키워드추출 또는 지정추출
 - * 전문기관의 장은 우수평가위원 중 2인내외, 해당 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 중 2인내외를 평가위원으로 지정 가능. 단 과제평가단 중 과반 이상은 지정할 수 없음
- ▶ 전문성 검증 : 추출된 평가위원 후보목록에서 전공분야, 각종 실적 및 제재정보, 제척기준 등 확인
- ▶ 우선순위 조정 및 확정 : 평가위원 후보풀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평가위원 후보풀 최종 확정

<과제 규모에 따른 과제평가단 구성>

구분	소형 및 중형	대형 및 연합형
과제평가단 구성	5명 내외	8명 내외

※ 지원 형태 및 규모에 따른 과제 분류 (붙임 2 참조)

3) 평가방법

- 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제출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해 서면평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로 진행되는 구두평가를 실시하되, 서면평가는 온라인(우편 포함)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나. 단, 1차년도 연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과제의 경우 1차년도 연차평가는 연차실적·계획서 제출로 같음 할 수 있음. 또한 2차년도 이후 연구기간 중 소형과제의 연차평가는 연차실적·계획서 제출로 같음 할 수 있으며, 중·대형과제의 연차평가는 중간모니터링으로 같음 할 수 있음

구분	소형	중형	대형	연합형
평가 방식	서면평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로 같음)	서면 또는 구두평가 (중간모니터링으로 같음)	구두평가 (중간모니터링으로 같음)	구두평가

- ※ 중간모니터링은 3명 내외의 전문가가 계속지원 또는 정밀평가 필요여부를 검토함
- ※ 연구자 및 연구기관 역량에 대한 심층평가, 정책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평가방식을 위의 표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다. 과제평가단은 과제특성에 따라 정성평가(평가결과는 “계속지원” 또는 “정밀평가” 결정) 또는 정량평가(평가결과를 점수화)를 함
- 라. 과제평가단에 의해 2명 이상의 “정밀평가” 의견이 제기된 과제는 정밀평가를 실시함
 - ※ 중간모니터링 결과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2명 이상 정밀평가 의견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정밀평가를 실시함
- 마. 정밀평가는 과제 규모에 따라 과제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식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량평가를 실시함

<정밀평가 실시 방법>

구분	소형 및 중형	대형 및 연합형
과제평가단 구성	외부전문가 5명	외부전문가 8명
평가방식	구두평가	현장방문평가

- 바. 정량평가는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단,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 사. 정밀평가(정량평가) 평가점수는 과제평가단의 토론을 통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60점 미만 과제는 지원을 중단함

2-3. 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

1) 연구비 조정

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최대 연구비 이내의 신청연구비, 전년도 연구비 수준, 예산사용 및 과제평가단·전문기관 연구사업관리자의 검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과장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비 조정을 실시함

2) 평가결과 보고

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 평가계획, 최종 평가점수, 연구비 조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단, 정밀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평가결과는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에도 보고함

3) 행정제재 검토

가. 평가결과 중단과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미제출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는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심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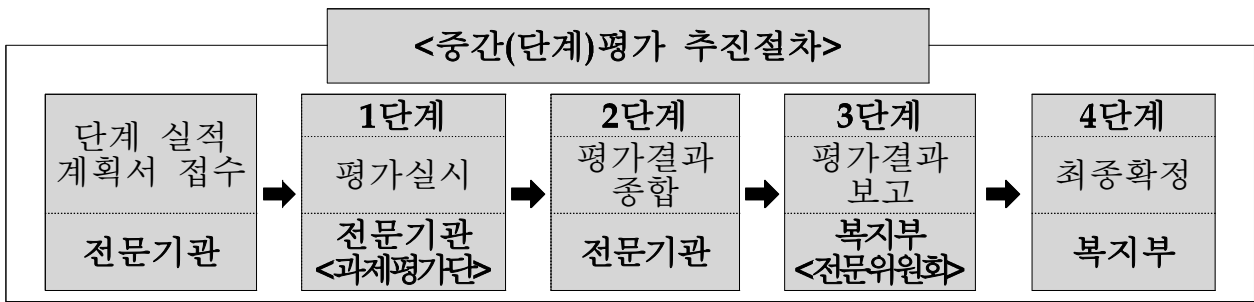
2-4. 최종확정

1) 확정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2) 확정방법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및 정밀평가인 경우는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제와 연구비를 최종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3. 중간평가 단계 (단계평가)



3-1. 단계실적 계획서 제출

1) 제출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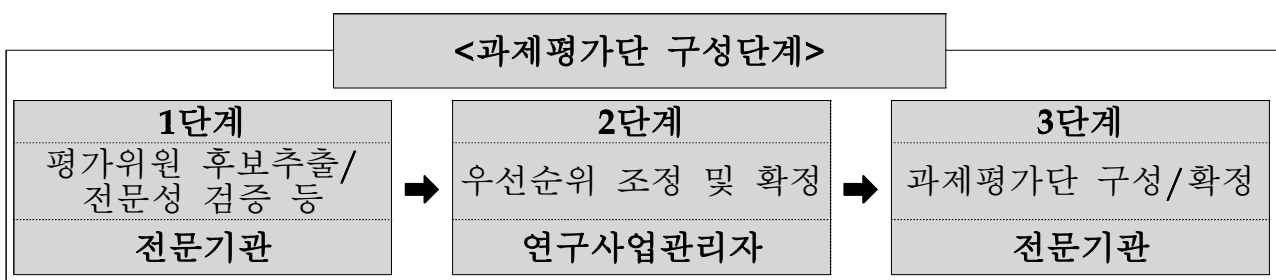
- 가. 전문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2개년도 이상이고 단계로 구분되어있는 과제에 대하여 『단계실적·계획서』를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음
- 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계실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 계속지원신청을 포기할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총괄 및 세부연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사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과제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단계실적·계획서』 제출 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정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3-2. 전문가 평가

1) 평가유형

- 가. 총 연구기간이 단계로 나누어진 과제에 대하여 계속지원여부 및 연구비 규모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전단계 실적 및 차기단계 계획을 단계평가함

2) 평가주체 : 과제평가단



- 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추출 및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함
- 나. 연구사업관리자는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을 실시

하고 확정함

다. 전문기관의 장은 위 각 절차를 거친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로부터 지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로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 및 평가단 구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8)을 고려하여 선정

<평가위원 후보자 풀 구성 설명>

연구분야, 나이, 산학연비율, 제척기준 등을 고려하여,

- ▶ 평가위원 후보추출 : 자동추출 또는 키워드추출 또는 지정추출
 - * 전문기관의 장은 우수평가위원 중 2인내외, 해당 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 중 2인 내외를 평가위원으로 지정 가능. 단 과제평가단 중 과반 이상은 지정할 수 없음
- ▶ 전문성 검증 : 추출된 평가위원 후보목록에서 전공분야, 각종 실적 및 제재정보, 제척기준 등 확인
- ▶ 우선순위 조정 및 확정 : 평가위원 후보풀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평가위원 후보풀 최종 확정

<과제 규모에 따른 과제평가단 구성>

구분	소형 및 중형	대형 및 연합형
과제평가단 구성	5명 내외	8명 내외

※ 지원 형태 및 규모에 따른 과제 분류 (붙임 2 참조)

3) 평가방법

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면평가, 구두평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함

나. 서면평가는 온라인(우편 포함)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두평가 시에는 과제평가단 위원 중에서 과제별 책임위원 및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음

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평가 대상과제에 대해 전문적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검토결과를 위의 서면평가, 구두평가, 현장점검에 반영할 수 있음

라.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의 종합평가점수 및 연구비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단,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3-3. 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

1) 과제분류

- 가. 평가 대상 및 비율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나. 평가의 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연구지원을 중단함
- 다. 상대평가의 경우 대상과제의 평가점수에 따라 하위 20%(중단과제 포함)에 대해서는 미흡으로 분류하며, 연구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연구비 조정

- 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최대 연구비 이내의 신청 연구비, 전년도 연구비 수준, 예산사용 및 과제평가단·전문기관 연구사업관리자의 검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과장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비 조정을 실시함

3) 평가결과 보고

- 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 평가계획, 최종 평가점수, 연구비 조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해당분야 전문위원회에 보고함

4) 행정제재 검토

- 가. 평가결과 중단과제 또는 『단계실적·계획서』 미제출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는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심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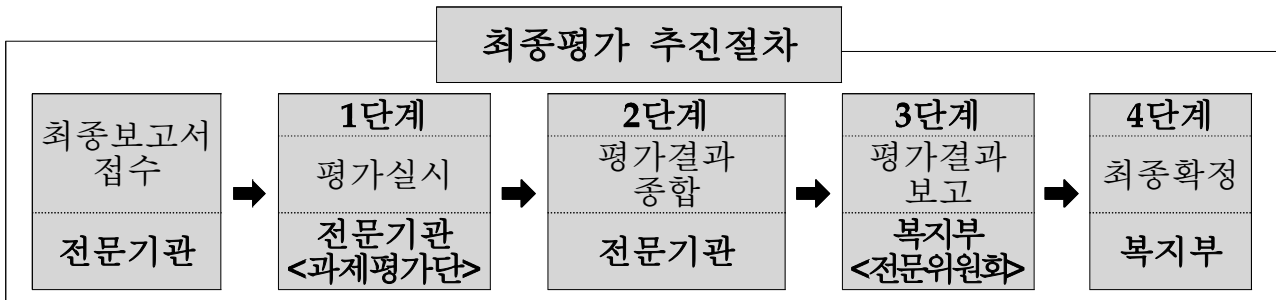
3-4. 최종확정

1) 확정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2) 확정방법

-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와 전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와 연구비를 최종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4. 최종평가 단계



4-1. 최종보고서 접수

1) 제출대상

- 가. 전문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4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음.
- 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결과 및 성과를 과제선정 시 제출한 『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종료 시 예상연구성과와 비교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함
- 다.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특허출원/등록증의 사본, 기타 연구과제물 등 연구성과물을 함께 첨부해야 함. 다만, 전문학술지 게재 승인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2) 최종평가 유예

- 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3년 이내인 과제에 한하여 논문게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정기간 최종평가를 유예할 수 있음
- 나.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과제에 한하여 연구주제의 사회적 민감도(정책활용 시기), 보안유지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정기간 최종평가를 유예할 수 있음

3) 최종평가 간소화

-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건에 따라 최종평가등급을 결정함

대상 세부사업	요건	비고
실용화 과제*	· 지원기간 동안에 발생한 매출액이 정부출연금 이상 발생한 경우	최우수등급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5호 정의에 따름

4) 총 연구기간 도래 전 종료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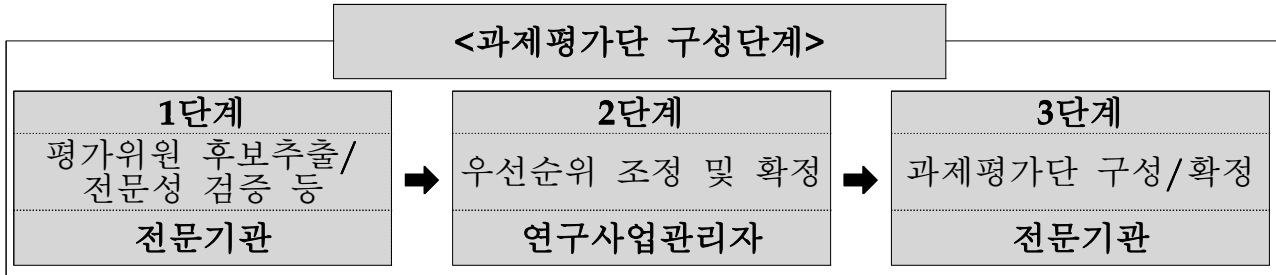
- 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RFP상에서 제시한 목표(최소요구성과)

및 연구자가 선정 당시 제시한 정량적, 정성적 연구목표를 달성한 과제에 대하여 “조기성공”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 수행을 통하여 목표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기간 만료 이전에 연구종료를 요청할 수 있음

4-2. 전문가 평가

1) 평가주체 : 과제평가단



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추출 및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함

나. 연구사업관리자는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을 실시하고 확정함

다. 전문기관의 장은 위 각 절차를 거친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로부터 지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로 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 및 평가단 구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8)을 고려하여 선정

<평가위원 후보자 풀 구성 설명>

연구분야, 나이, 산학연비율, 제척기준 등을 고려하여,

▶ 평가위원 후보추출 : 자동추출 또는 키워드추출 또는 지정추출

* 전문기관의 장은 우수평가위원 중 2인내외, 해당 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 중 2인내외를 평가위원으로 지정 가능. 단 과제평가단 중 과반 이상은 지정할 수 없음

▶ 전문성 검증 : 추출된 평가위원 후보목록에서 전공분야, 각종 실적 및 제재정보, 제척기준 등 확인

· 우선순위 조정 및 확정 : 평가위원 후보풀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우선순위를